

남북협력기금 재무제표

제 24 기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3 기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재 무 제 표	
재 정 상 태 표	3
재 정 운 영 표	5
순 자 산 변 동 표	6
주 석	7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남북협력기금
기금수탁관리자 귀하

2015년 2월 27일

우리는 별첨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기금수탁관리자의 책임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기금수탁관리자가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기금의 재무제표는 남북협력기금의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의 변동을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북한조선무역은행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북한조선무역은행의 대여금 1,022,849백만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여금 1,374,393백만원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경제협력사업보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2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및 보험회계준칙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5년 2월 2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기금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 정 상 태 표

제 24 기 2014 년 12 월 31 일 현재
제 23 기 2013 년 12 월 31 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자산				
I. 유동자산		775,527,928,838		939,875,420,305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		56,276,385,168		422,792,506,782
1) 현금및현금등가물	56,276,385,168		422,792,506,782	
2. 단기금융상품(주석 3)		183,500,000,000		173,500,000,000
1) 정기예금	36,500,000,000		42,500,000,000	
2) 기타의 단기금융상품	147,000,000,000		131,000,000,000	
3. 단기투자증권(주석 4)		327,653,855,531		110,581,352,609
1) 지분증권	327,653,855,531		110,581,352,609	
4. 미수채권(주석 6,12)		38,340,726,310		64,276,818,714
1) 미수이자수익	7,893,941,654		8,302,609,865	
2) 기타의 미수금	51,435,133,130		60,137,578,490	
기타의 미수금대손충당금	(20,988,348,474)		(4,163,369,641)	
1) 기타의 미수금대손충당금	(20,988,348,474)		(4,163,369,641)	
5. 단기대여금(주석 5,6)		169,756,961,829		168,724,742,200
1) 정부의 단기대여금	181,558,449,275		178,859,681,832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11,801,487,446)		(10,134,939,632)	
1)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2,895,557,068)		(2,971,465,843)	
2)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8,905,930,378)		(7,163,473,789)	
II. 투자자산		2,722,266,570,484		2,637,052,291,286
1. 장기금융상품(주석 3)		10,000,000,000		-
1) 기타의 장기금융상품	10,000,000,000		-	
2. 장기대여금(주석 5,6)		2,565,302,070,302		2,528,503,138,286
1) 정부의 장기대여금	2,574,569,073,343		2,537,695,265,391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9,267,003,041)		(9,192,127,105)	
1)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5,928,331,855)		(5,923,899,963)	
2)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3,338,671,186)		(3,268,227,142)	
3. 장기투자증권(주석 4)		146,964,500,182		108,549,153,000
1) 지분증권	146,964,500,182		108,549,153,000	
III. 일반유형자산(주석 7)		51,529,477,987		29,292,096,292
1. 토지		10,197,916,390		-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2. 건물		41,067,871,093		-
1) 건물	41,239,703,190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71,832,097)		-	
3. 집기·비품·차량운반구		263,690,504		-
1) 사무용기기	128,697,080		-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1,984,947)		-	
2) 사무용집기	42,738,400		-	
사무용집기감가상각누계액	(412,759)		-	
3) 운반건설기계및차량	95,660,000		-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감가상각누계액	(1,007,270)		-	
4.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29,292,096,292
1) 건설중인토지	-		9,806,439,032	
2) 건설중인건물	-		19,485,657,260	
IV. 기타비유동자산		67,324,480,618		68,484,913,346
1. 장기미수채권(주석 6)		67,324,480,618		68,484,913,346
1) 장기미수이자수익	67,324,480,618		68,484,913,346	
자 산 총 계		3,616,648,457,927		3,674,704,721,229
부채				
I. 유동부채		113,157,216,657		311,606,434,550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주석 8)		90,500,000,000		291,591,000,000
1) 유동성장부내장기차입금	90,500,000,000		291,591,000,000	
2. 기타유동부채		22,657,216,657		20,015,434,550
1) 미지급비용	22,651,139,946		20,015,434,550	
2) 선수수익	6,076,711		-	
II. 장기차입부채		2,209,000,000,000		2,070,900,000,000
1. 장기차입금(주석 8)		2,209,000,000,000		2,070,900,000,000
1) 정부내장기차입금	2,209,000,000,000		2,070,900,000,000	
부 채 총 계		2,322,157,216,657		2,382,506,434,550
순자산				
I. 적립금및잉여금		1,289,290,958,512		1,285,367,781,070
II. 순자산조정(주석 11)		5,200,282,758		6,830,505,609
순 자 산 계		1,294,491,241,270		1,292,198,286,679
부채와순자산계		3,616,648,457,927		3,674,704,721,229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 정 운 영 표

제 24 기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3 기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원)

과 목	제 24 (당) 기			제 23 (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주석 9, 12)	67,174,095,028	(8,992,053,661)	58,182,041,367	44,315,219,698	(11,209,768,434)	33,105,451,264
1. 평화통일기반조성	2,322,386,738	-	2,322,386,738	-	-	-
2. 남북사회문화교류프로그램	3,440,491,521	(240,890,410)	3,199,601,111	2,069,032,727	(15,327,460)	2,053,705,267
3. 인도적문제해결프로그램	18,458,779,443	(183,606,150)	18,275,173,293	15,485,415,746	(474,418,680)	15,010,997,066
4. 남북경제협력프로그램	23,465,168,181	(6,405,247,715)	17,059,920,466	17,896,252,828	(8,800,928,659)	9,095,324,169
5. 개성공단지원프로그램	19,487,269,145	(2,162,309,386)	17,324,959,759	8,864,518,397	(1,919,093,635)	6,945,424,762
II. 관리운영비			60,709,590			111,041,610
1. 경비			60,709,590			111,041,610
(1)외주용역비			60,709,590			111,041,610
III. 비배분비용			100,213,000,908			123,841,613,551
1. 이자비용			99,291,953,486			108,534,687,241
2. 평가손실(주 7)			93,933,832			15,257,754,280
3. 자산처분손실			802,093,590			49,172,030
4. 기타비용(주 10)			25,020,000			-
IV. 비배분수익			68,978,929,307			41,324,656,983
1. 이자수익			23,564,612,538			25,745,122,653
2. 평가이익			40,969,881,246			-
3. 자산처분이익			4,198,600,283			15,579,534,330
4. 기타수익(주 10)			245,835,240			-
V. 재정운영순원가 (I +II+III-IV)			89,476,822,558			115,733,449,442
VI. 비교환수익등			-			212,675,502
1. 기타재원조달및이전			-			212,675,502
VII. 재정운영결과(V-VI)			89,476,822,558			115,520,773,940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순자산변동표

제 24 기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3 기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전기초)	-	1,295,388,555,010	18,698,084,400	1,314,086,639,410
1. 보고금액	-	1,295,388,555,010	18,698,084,400	1,314,086,639,410
II. 재정운영결과	-	115,520,773,940	-	115,520,773,940
III. 조정항목	-	105,500,000,000	(11,867,578,791)	93,632,421,209
1. 투자증권평가손실(주식 4)	-	-	(11,867,578,791)	(11,867,578,791)
2. 기타순자산의증감	-	105,500,000,000	-	105,500,000,000
IV. 기말순자산(전기말)(I- II+III)	-	1,285,367,781,070	6,830,505,609	1,292,198,286,679
I. 기초순자산(당기초)	-	1,285,367,781,070	6,830,505,609	1,292,198,286,679
1. 보고금액	-	1,285,367,781,070	6,830,505,609	1,292,198,286,679
II. 재정운영결과	-	89,476,822,558	-	89,476,822,558
III. 조정항목	-	93,400,000,000	(1,630,222,851)	91,769,777,149
1. 투자증권평가손실(주식 4)	-	-	(1,630,222,851)	(1,630,222,851)
2. 기타순자산의증감	-	93,400,000,000	-	93,400,000,000
IV. 기말순자산(당기말)(I- II+III)	-	1,289,290,958,512	5,200,282,758	1,294,491,241,270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 석

제 24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23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1. 기금의 개요

남북협력기금(이하“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대한민국정부가 25,000백 만원을 출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 7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기금의 재무제표는 2009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국가회계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기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장·단기금융상품

기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 및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유가증권

기금은 유가증권에 대해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거나 1년 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등의 평가

기금은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차주, 보증인, 유가증권 발행인, 보증의뢰인 등 관련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였습니다. 기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분류된 대여금에 대해서 각각 0.85% 이상(일부 업종은 0.9% 이상), 7% 이상, 20% 이상, 50% 이상 및 100%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회수가 예상되는 담보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 제 58조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기금은 대여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는 용자금의 경우 용자회계준칙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자금의 원금에서 추정 회수가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대여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용자금의 평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조선무역은행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용자금 등에 대해서 차주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자산의 차감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태표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20년	정액법
사무용기기	4 ~ 11년	정액법
사무용집기	8 ~ 10년	정액법
운반건설기계및차량	5 ~ 8년	정액법

(8) 자산의 감액 등

기금의 재정상태표 자산 중 국가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내역을 주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장부가액까지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 우발상황

기금은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과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외화자산의 환산

기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미달러화 기준환율 (당기말 ₩1,099.2/USD) 및 재정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산손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 출연금

기금이 수령하는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은 기금설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하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의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처리하며,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자산매입, 대여 등)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에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위탁수수료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 7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5조 제 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통일부와 협의된 위탁수수료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고 프로그램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2014년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금융기관
	2014.12.31	2014	2013	
현금및현금성자산 :				
MMDA	1.95	2,481	1,212	국민은행
MMT	2.50	34,864	181,624	하나대투증권 외
MMF	실적배당	760	742	삼성자산운용 외
MMW	3.22	18,171	237,215	한국투자증권 외
정기예금	-	-	2,000	
		<u>56,276</u>	<u>422,793</u>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2.90	36,500	42,500	한국외환은행
MMT	3.13 ~ 3.30	22,000	76,000	신한금융투자 외
MMW	3.22 ~ 3.80	125,000	55,000	현대증권 외
		<u>183,500</u>	<u>173,500</u>	
장기금융상품 :				
MMT	3.60	10,000	-	교보증권
		<u>10,000</u>	<u>-</u>	
		<u>249,776</u>	<u>596,293</u>	

4. 장·단기투자증권

2014년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장·단기투자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3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단기투자증권 :						
지분증권(*)	320,347	327,654	327,654	103,300	110,581	110,581
채무증권	-	-	-	-	-	-
	<u>320,347</u>	<u>327,654</u>	<u>327,654</u>	<u>103,300</u>	<u>110,581</u>	<u>110,581</u>
장기투자증권 :						
지분증권(*)	149,071	146,965	146,965	109,000	108,549	108,549
채무증권	-	-	-	-	-	-
	<u>149,071</u>	<u>146,965</u>	<u>146,965</u>	<u>109,000</u>	<u>108,549</u>	<u>108,549</u>
	<u>469,418</u>	<u>474,619</u>	<u>474,619</u>	<u>212,300</u>	<u>219,130</u>	<u>219,130</u>

(*)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은 모두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이며, 당기 중 발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1,630 백만원 및 전기 중 발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11,868 백만원을 각각 장부가액에 가감하였습니다. 다만, 당기 중 발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1,630 백만원에는 투자증권 처분시 처분이익으로 계상된 투자증권평가이익 감소분 5,039 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대여금

(1) 기금은 남북한의 상호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자대상은 남북간 경제교류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 및 남북 당국간 합의된 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북한당국 등입니다.

(2) 2014년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용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2014.12.31	2014	2013
용자금	0.0 ~ 5.9	2,756,128	2,716,555
용자보조원가충당금		(12,245)	(10,432)
대손충당금		(8,824)	(8,895)
		<u>2,735,059</u>	<u>2,697,228</u>

(3) 2014년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연이자율(%)	금 액	
		2014.12.31	2014	2013
정부외 단기대여금	실적한도대출	1.0 ~ 3.5	6,475	6,807
	반출자금대출	3.0 ~ 4.9	393	460
	특별경제협력자금대출	2.0 ~ 3.0	125,671	40,835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8 ~ 5.9	14,555	88,466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9,723	4,897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24,742	37,395
			<u>181,559</u>	<u>178,860</u>
정부외 장기대여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8 ~ 5.9	141,742	147,158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53,208	57,822
	경수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1,374,393	1,374,393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1,005,226	958,322
			<u>2,574,569</u>	<u>2,537,695</u>
			<u>2,756,128</u>	<u>2,716,555</u>

(4)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대출종류별 정부승인금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백만원)

대출종류	차주별	정부승인금액	집행금액	회수금액	대출잔액
대북식량차관(2000)	북한조선무역은행	USD 100,000	USD 88,355	USD -	USD 88,355
대북식량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106,000
대북식량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106,000
대북식량차관(2004)	북한조선무역은행	124,000	117,986	-	117,986
대북식량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155,000	150,000	-	150,000
대북식량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154,000	151,701	-	151,701
대북자재장비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45,000	42,887	-	42,887
대북자재장비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60,000	68,051	-	68,051
대북자재장비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28,500	21,959	-	21,959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80,000	80,000	2,400	77,60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3,000	13,000	6,523	6,477
		USD 979,500	USD 945,939	USD 8,923	USD 937,016
대북경수로사업 대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3,542,000	1,374,393	-	1,374,39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6,100	22,920	9,168	13,75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900	801	320	48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0,400	9,255	925	8,33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5,900	14,309	986	13,32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910	7,444	155	7,28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768	3,703	199	3,50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999	5,973	446	5,52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338	3,338	241	3,09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068	4,810	472	4,33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289	3,289	-	3,289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한국관광공사 외	375,606	335,546	46,710	288,836
		4,001,278	1,785,781	59,622	1,726,159
		USD 979,500	USD 945,939	USD 8,923	USD 937,016
		4,001,278	1,785,781	59,622	1,726,159

2014년 12월 31일 현재 외화표시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원화환산액은 1,029,968백만원입니다.

(5) 2014년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에 대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정부외 장·단기대여금	용자보조원가 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1,022,849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70,050	4,282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88,836	7,963	8,824
	<u>2,756,128</u>	<u>12,245</u>	<u>8,824</u>

구 분	2013		
	정부외 장·단기대여금	용자보조원가 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981,998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76,438	4,163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83,726	6,269	8,895
	<u>2,716,555</u>	<u>10,432</u>	<u>8,895</u>

(*)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은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및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2,397,242백만원(전기: 2,356,391백만원)에 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 현재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1,022,849백만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1,374,393백만원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기금이 당기와 전기 중 용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용자보조비용 및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3
용자보조비용	3,937	5,810
대손상각비	232	800
	<u>4,169</u>	<u>6,610</u>

6. 외화자산

2014년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백만원)

계정과목	외화종류	2014.12.31		2013.12.31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미수채권	USD	2,341	2,573	-	-
단기대여금	USD	22,509	24,742	35,435	37,395
장기미수채권	USD	51,040	56,103	53,381	56,333
장기대여금	USD	914,507	1,005,226	908,104	958,322
		<u>990,397</u>	<u>1,088,644</u>	<u>996,920</u>	<u>1,052,050</u>

7. 일반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일반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기초	취득	상각	기타증감	기말
토지	-	472	-	9,726	10,198
건물	-	21,535	(172)	19,705	41,068
사무용기기	-	129	(2)	-	127
사무용집기	-	43	(1)	-	42
운반건설기계및차량	-	95	(1)	-	94
건설중인 토지	9,806	-	-	(9,806)	-
건설중인 건물	19,486	-	-	(19,486)	-
	<u>29,292</u>	<u>22,274</u>	<u>(176)</u>	<u>139</u>	<u>51,529</u>

구 분	2013		
	기초	취득	기말
건설중인 토지	5,839	3,967	9,806
건설중인 건물	8,958	10,528	19,486
	<u>14,797</u>	<u>14,495</u>	<u>29,292</u>

(2) 기타증감에는 당기 중 한반도통일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로 대체된 금액 29,292백만원, 전기오류수정이익 233백만원 및 토지재평가손실 94백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3) 일반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재평가액 추정방법 및 유의적가정	재평가액(A)	재평가전장부가액(B)	재평가손익(A-B)
토지	공시지가	10,198	10,292	(94)

8. 차입금

(1) 2014년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금액	
		2014.12.31	2014	201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감: 1년이내상환일도래분)	한국은행	2.76 ~ 5.89	2,299,500	2,362,491
			(90,500)	(291,591)
			2,209,000	2,070,900

(2)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상환연도	금액
2015년	90,500
2016년	207,000
2017년	765,000
2018년	278,400
2019년	203,000
2020년 이후	755,600
	2,299,500

9. 프로그램순원가

(1)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총원가를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합 계
	평화통일기반조성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업무대행수수료	751	105	568	685	674	2,783
기타용역비	39	28	43	93	-	203
기타민간보조비	1,357	3,308	17,848	2,524	17,927	42,964
대손상각비	-	-	-	17,061	-	17,061
융자보조비용	-	-	-	3,051	886	3,937
감가상각비	175	-	-	-	-	175
보험금지급비	-	-	-	51	-	51
	2,322	3,441	18,459	23,465	19,487	67,174

구 분	2013					합 계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업무대행수수료	19	141	1,791	778		2,729
기타용역비	5	15	148	-		168
기타민간보조비	2,045	15,329	6,508	5,829		29,711
대손상각비	-	-	4,963	-		4,963
융자보조비용	-	-	3,552	2,258		5,810
보험금지급비	-	-	934	-		934
	2,069	15,485	17,896	8,865		44,315

(2)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총수익을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합 계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	-	4,834	1,508		6,342
보험수익	-	-	1,338	-		1,338
대손충당금환입	-	-	-	4		4
잡이익	241	184	233	650		1,308
	241	184	6,405	2,162		8,992

구 분	2013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정공단지원	합 계
정부의용자금이자수익	-	-	6,228	1,175	7,403
보험수익	-	-	1,407	-	1,407
잡이익	15	474	1,166	744	2,399
	15	474	8,801	1,919	11,209

10. 기타비용 및 기타수익

구 분	계 정 과 목	(단위: 백만원)	
		2014	2013
기타비용(비배분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	25	-
		25	-
기타수익(비배분수익)	잡이익	13	-
	전기오류수정이익	233	-
		246	-

11. 순자산조정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순자산조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4				2013			
	당기초	증가	감소	당기말	전기초	증가	감소	전기말
	투자증권평가손익							
단기투자증권								
지분증권	7,281	5,064	5,039	7,306	18,698	3,306	14,723	7,281
장기투자증권								
지분증권	(451)	(1,655)	-	(2,106)	-	(451)	-	(451)
	6,830	3,409	5,039	5,200	18,698	2,855	14,723	6,830

12.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기금은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에게 북한 당국의 몰수, 사업중단 등 경영외적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계약을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 류	회 사 명	계약확정금액	계약미확정금액
경제협력사업보험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07개 업체	262,908	104,282

(2)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4조 및 보험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2013년 4월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기금은 2013년 8월 7일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59개 업체에 1,76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제 2차 남북공동위원회의 합의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됨에 따라 기금은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에 의거 보험금 수령업체에게 보험금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254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기금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미회수한 보험금 514억원에 대하여 기타의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금은 경협보험 약관 및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보험금 미반납업체의 개성공업지구 내 재산에 대한 대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회수가 예상되는 담보금액을 제외한 미수금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4)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